

-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-

# 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2005년 4월 11일

회부일자 : 2005년 4월 12일

제안 이유

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·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(안 제4조)

집행기관의 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해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, 결산 및 기금운용상황, 도정의 주요통계,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등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도민에게 공개(안 제5조)

행정정보의 공개는 인터넷, 도보, 게시판 또는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(안 제7조)

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2명

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(안 제9조)

-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,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(안 제11조)

## □ 검토 의견

- 도민의 알 권리 를 보장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통한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,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
### 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개대상기관의 정보를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
- 안 제4조 집행기관의 장 의무에서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·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 정보공개대상은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, 결산 및 기금운용상황, 도정의 주요통계,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등 13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여 행정의 주체인 도민의 알 권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.
- 아울러 안 제7조 공개방법에서는 인터넷, 도보, 게시판 또는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등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,

- 안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임기에 있어 당연직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동안,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1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## ○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동 조례안은 도민의 도정참여를 통한 투명한 도정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행정정보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.
- 다만 안 제9조 제8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조례안에 명시치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무엇보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대부분의 광역시·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조례 또는 규칙,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고, 또 그 동안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을 통해 현실에 맞게 수정 운영하고 있으나,
- 우리 도는 이제야 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부.